

공동 도급 업무 관리 규정

공동도급 업무 관리 규정

문서번호 : MAN-규정-00000

개 정 : 0

페이지 : 6 의 1

목 차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제 2 조 (적용)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제 4 장 공동도급 계약

제 9 조 (관리부서)

제 10 조 (계약서)

제 11 조 (Cooperation Agreement)

제 2 장 공동도급 영업

제 4 조 (관리부서)

제 5 조 (관리사항)

제 5 장 공동도급 수행 관리

제 12 조 (범위 및 관리부서)

제 13 조 (관리사항)

제 14 조 (운영)

제 3 장 공동도급 입찰

제 6 조 (관리부서)

제 7 조 (입찰정보의 조사 및 제공)

제 8 조 (투찰가액 및 비밀유지)

제 6 장 임원협의체

제 15 조 (운영 목적)

제 16 조 (협의체 구성)

제 17 조 (개최 대상)

제 18 조 (운영)

[부 칙]

공동도급 업무 관리 규정

문서번호 : MAN-규정-00000

개 정 : 0

페이지 : 6 의 2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공동도급공사와 관련한 영업, 입찰, 계약 및 수행 관리를 함에 있어 단계별 업무 절차와 준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)

- ① 본 규정은 국내 및 국외 모든 공동도급공사에 적용한다. 다만, 국내 적격공사(간이중심제 포함) 입찰은 제외한다.
- ② 본 규정의 주관부서는 경영기획팀으로 한다.
- ③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‘업무분장 및 결재규정’에 따른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파트너(Partner):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할 업체이며, 본 규정에서는 ‘주관사’를 일컫는다
- ② Cooperation Agreement: Partner 사와의 협력을 위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으로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제반 협약서, 약정서(NDA 및 MOU 를 포함한다)를 의미한다.
- ③ NDA: Non-Disclosure Agreement 의 약자로 비밀 유지 약정서를 의미한다.
- ④ MOU: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Cooperation Agreement 와 관련해서는 Partner 로 협력(Cooperation) 한다는 취지를 담은 문서이며, 내용에 따라 Binding, Non-binding 으로 구분될 수 있다
- ⑤ Pre-Bid Agreement: 프로젝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.
- ⑥ 임원협의체 : 본 규정 제 17 조 내지 제 20 조의 임원협의체는 공동도급공사 업무 관련 협의체를 의미한다.

제 2 장 공동도급 영업

제 4 조 (관리부서) 공동도급 영업 관련 관리부서는 영업견적팀으로 한다.

제 5 조 (관리사항)

- ① 국내 및 해외 공동도급 영업활동 관련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입수 시 해당자는 프로젝트 개요, 파트너 및 Cooperation 구도에 대하여 영업견적팀과 업무 공유를 한다.
- ② 전항 중 제 17 조(협의체 개최 대상)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필수항목을 작성, 검토 후 임원협의체를 소집한다.
 1. 프로젝트 개요 : 발주처, 입찰방식, 발주공종, 규모, 공사기간, 입찰일정 등의 내용
 2. 파트너사(주관사) : 기술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, 재무건전성, 주요 의사결정권자와 관계력, 신뢰력(평판), 타사와 공동도급 경험 등의 내용

공동도급 업무 관리 규정

문서번호 : MAN-규정-00000

개 정 : 0

페이지 : 6 의 3

- ③ 파트너 사에서 보내온 NDA, Non-binding MOU 등이 있을 경우 관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
- ④ 해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본부장(지사장 포함)과 영업견적팀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.

제 3 장 공동도급 입찰

제 6 조 (관리부서) 공동도급공사 입찰 관리부서는 영업견적팀으로 한다.

제 7 조 (입찰정보의 조사 및 제공)

- ① 파트너사로부터 프로젝트 입찰과 관련한 Pre-bid Agreement, Binding MOU 등 법적 구속력있는 계약관련 정보 입수 후 제 19 조(협업체 개최 대상)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다음의 필수항목을 검토 후 임원협의체를 소집한다.
 - 1. JV 주관사의 책임 : 파트너사의 역량, 재무건전성, 신용
 - 2. 참여사의 권리 및 제한 : 입찰 전 까지 입찰 포기 가능 여부
 - 3. 법적책임
 - 4. 지분율
 - 5. 입찰관련 금액
 - 6. 입찰 비용의 처리
 - 7. 계약의 기간 : 계약 해지 관련 조항 검토
 - 8. 인원구성 : 파견 직원 급여 책정 검토
- ② 관리부서는 Cooperation 관련 모든 협력 구도와 관련한 Risk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중대한 사항(Critical Issue)이 발생한 경우 관련부서 및 임원과 협의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입찰계약서에 대한 변호사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
 - 2. 주관사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
 - 3. 입찰 금액의 변경
 - 4. 입찰 조건의 변경

제 8 조 (투찰가액 및 비밀유지)

- ① 투찰가액의 산정에 있어 관리부서는 관련 사업부서, 해외본부(지사 포함) 및 지원본부 등과 면밀히 협의하여 투찰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.
- ② 입찰 결과 발표 전까지 해당 프로젝트 관련 임직원은 투찰가액에 대한 비밀 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.

공동도급 업무 관리 규정

문서번호 : MAN-규정-00000

개 정 : 0

페이지 : 6 의 4

제 4 장 공동도급 계약

제 9 조 (관리부서) 공동도급 계약 관련 관리부서는 영업견적팀으로 한다.

제 10 조 (계약서) 발주처와 시공사와의 계약서 대한 업무처리는 “업무 분장 및 결제규정”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 11 조 (Cooperation Agreement)

① 파트너사(주관사)로부터 Cooperation Agreement 입수 시 제 19 조(협의체 개최 대상)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다음의 필수항목을 검토 후 임원협의체를 소집한다.

1. 참여 형태 : IJV(직영/하도급), consortium, 공동분담이행방식, 공동이행방식
2. 지분의 분담
3. 운영위원회구성 및 의결방법
4. 현장운영 및 기구조직
5. 하청업체선발기준
6. Working Capital (Mobil 비용 및 초기운영자금)
7. 추정 현금흐름표
8. 자금투입 및 집행방법
9. 공사 이익 및 결손처리
10. 협정서 효력 및 계약파기, 탈퇴 등
11. 중재 및 법률

제 5 장 공동도급 수행 관리

제 12 조 (범위 및 관리부서) 공동도급공사 수행에 있어 개별 현장의 관리와는 별도로 공사지원팀은 총괄적, 주기적으로 공사 수행 상태를 관리한다.

제 13 조 (관리사항)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.

1. 공정현황 - 월별
2. 기성 및 원가현황 - 월별
3. 수금 현황 - 월별
4. VO 청구 현황 - 분기별
5. Claim 청구 현황 - 분기별
6. E/S 청구 현황 - 분기별
7. 회계결산자료 - 분기별, 년별

공동도급 업무 관리 규정

문서번호 : MAN-규정-00000

개 정 : 0

페이지 : 6 의 5

제 14 조 (운영)

- ① 제 13 조(관리사항) 관련 보고는 매월 'JV 운영보고서' 작성하여 관련부서 협조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
- ② 공동도급 수행 중 중대한 이슈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관리부서는 임원협의체를 소집하여 운영 한다.

제 6 장 임원협의체

제 15 조 (운영 목적) 공동도급공사의 영업, 입찰, 계약 및 수행관리에 있어 관련 부서 및 임원들의 검토와 의견 개진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한다.

제 16 조 (협의체의 구성)

- ① 임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회장, 부회장, 대표이사, 해외본부장, 영업견적팀, 공사지원팀, 회계자금팀 임원이며,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.
- ② 대표이사가 회의를 주재하며, 협의체의 소집 및 기록유지와 관련하여 영업, 입찰 및 계약부문은 영업견적팀, 공사수행 부문은 공사지원팀이 관리한다.

제 17 조 (협의체 개최 대상) 협의체 개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①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
- ② 참여 공종에 있어 당사의 실적이 없거나 주된 공종이 아닌 경우
- ③ 신규 파트너사인 경우
- ④ 민간투자공사, 차관공사 및 재정공사에 참여하는 경우
- ⑤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을 시

제 18 조(운영)

- ① 관리부서는 프로젝트가 협의체 개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체 개최일 1 주일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 안내한다.
- ② 관리부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관리부서가 검토한 제 5 조(관리사항), 제 7 조 (입찰정보의 조사 및 제공), 제 11 조 (Cooperation Agreement) 및 제 14 조(운영)에 대하여 구성원에 배포, 공유한다.
- ③ 제 2 항에 따라 문서를 수신한 협의체 구성원은 검토 및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.
- ④ 협의체에서 결정 된 사항은 '업무분장 및 결재규정'에 따라 보고, 품의를 득 한다.

공동도급 업무 관리 규정

문서번호 : MAN-규정-00000

개 정 : 0

페이지 : 6 의 6

[부 칙] (2022. 10. 01)

제 1 조 (시행) 본 규정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